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1
----------	------

발의연월일 : 2012. 8. 16.

발 의 자 : 이자스민·김장실·민병주  
박민수·박인숙·서영교  
유기준·이만우·아베리사  
이학영·이한성·이현재  
전정희·전해철·최민희  
현영희·황영철·황진하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에 일본인이 말뚝을 세우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그 밖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상금의 청구 등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인정되지 아니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일본 당국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내부의 우익세력 등의 활동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고 역사를 바르게 보존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3 신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1조의3(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u>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측된다(안 제11조의3 신설).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 3. 미첨부 사유

2012년 5월 현재 국내외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61명으로([표 1])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sup>1)</sup>”에서는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예산액으로 2013년 기준 11억 3,000만원(1인당 월 98만 2,000원)이 계상되었다.

---

1) 동법 제2조의2 및 제4조에 근거하여 1993년부터 실시

[표 1] 국내외 거주자 현황

(단위: 명)

국내	생존		사망	합 계
	국외	소계		
55	6	61	174	235

자료: 여성가족부(2012.7)

[표 2] 연령별 현황

(단위: 명)

	77~79세	80~84세	85~89세	90세이상	평균 연령	합 계
인원	4	23	26	8	83	61

주: 2012년 7월, 만 나이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2012.7)

[표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수 및 예산액

(단위: 명, 백만원)

	2011(결산)	2012(예산)	2013(예산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수(생활안정지원대상자수)	79	68	61
지원액	1,231	1,882	1,130

자료: 여성가족부(2012.7)

[표 4] 생활안정지원금 연도별 추이

(단위: 천원)

	'93	'94	'95	'96	'97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월지원	150	150	200	250	500	500	535	600	640	700	740	780	800	824	865	908	953
일시금						5,000											43,000

주: 일시금의 경우 '98년부터 4,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종전 등록자에게도 추가분 지급

자료: 여성가족부(2012.7)

개정안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 금액(소가)은 건당 1억원<sup>2)</sup>으로 가정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표 3]에 따라 건당 254만원이다. 이때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sup>3)</sup>. 2012년

2) 한국인 위안부였던 사람들이 1992년, 1993년 공식사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소할 적이 있고, 2012년 현재 정부에서 대일(對日)협상이 진행 중이나, 소송가액이나 손해배상 관련한 자료는 취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1995년 7월 19일 일본 무라야마 토미이치 총리에 의해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285명의 위안부에게 총 570만달러(1인당 약 2만달러)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

5월 현재 생존 피해자수는 61명으로 총 소요비용은 1억 5,478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의안에 관한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한다.

[표 5] 법률상담 등 소요비용 산출내역

① 인지대 : 455,000원 = 100,000,000원(소가) × (40/10,000) + 55,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제12조 제3호)
② 송달료 : 172,400원 {3,060원(1회송달료) × 20회분 × 2인(당사자)} + 50,000원(국제송달 추가소요 추정분) (송달료규칙 및 재판예규 1385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재일 87-4')
③ 변호사보수 : 1,910,000원 171만원 + (10,000만원 - 9,000만원) × 2/100(송소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①+②+③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대리 건당 단가 : 2,537,400원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2012.7)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건,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수행건수(a)	61	-	-	-	-	-
건당 비용(b)	25	-	-	-	-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비용(a*b)	155	-	-	-	-	1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

과 장 박 선 춘

예산분석관 여 은 구

(788-4742, bce2@nabo.go.kr)

3)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관할권이 일본에 있어서 공단(국내 변호사)을 통한 소송대리는 불가하다.